

2026 한국밀교 문화집성 및 진호국가 의례복원사업
『티베트 천수천안대비존 식재호마의례』 시설운영 용역
입찰공고문

2026. 10.

대한불교진각종
밀교의례사업단

담당	발 주 자	밀교의례사업단	김수창	TEL: 02-913-0751	FAX : 02-913-0755
	입찰 및 계약	사업단 행정지원팀	김정현	TEL: 02-913-0751	FAX: 02-913-0755

1. 입찰 공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사업명 : 2026 한국밀교 문화집성 및 진호국가 의례복원사업 『티베트 천수천안대비 존 식재호마의례』 무대설치 및 운영 용역업체 선정.
- 나. 사업내용 : 제안요청서 참조
- 진각문화전승원 잔디밭을 활용한 무대설치 및 철거, 프로그램 관련 시스템 설치 및 철수, 인력운영, 유지보수,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 일체
 - 행사기간 : 2026. 11. 12.(목) ~ 11. 13.(금) 2일간 / 행사장소 :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(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)
- 다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. 12. 14.까지 (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)
- 라. 사업예산 : **금 19,800천원(금일천구백팔십만원)** - 부가가치세 포함
- * **입찰가격이 예정가격(사업예산)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.**

2. 입찰 참가자격

- 가. 공고일 현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, 사업자등록증상 행사·무대·음향·조명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- 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후 그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- 다.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, 등록 취소, 휴업,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,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
- 라.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국세·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업체 (납세증명서로 확인)
- 마.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밀교의례사업단에서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
- 바. 발주처(대한불교진각종 및 밀교의례사업단) 소속 임직원 및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대표이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등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닐 것 (별지서식 7 확인서 제출)
- 사. 본 용역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(공동이행)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.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며, 장비 임차 등 일부 하

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
아.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

3. 입찰 및 낙찰 방식

가. 입찰방식 : 일반경쟁입찰(공개입찰), 총액입찰

나. 낙찰자 결정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 (제안서 평가)

- 사업단이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(기술능력평가 80%[정량적 평가 20점, 정성적 평가 60점], 입찰가격평가 20%)
-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(80점)의 85%(68점)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,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함.
-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함.
-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사업단의 고유 권한으로, 입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다. 보증금 :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(별지서식 2) 제출로 같음함.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

라. 대금지급 : 과업 완료 및 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, 선금은 지급하지 않음

4. 제출서류 (제안요청서 참조)

가.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: 입찰참가신청서(별지서식 1), 입찰보증금 지급각서(별지서식 2), 사용인감계(별지서식 3), 위임장(대리인 제출 시, 별지서식 4), 보안 서약서(별지서식 5), 청렴계약 이행서약서(별지서식 6),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없음 확인서(별지서식 7)

나.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
다. 정량적 평가자료 각 1부 :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, 주요사업실적(총괄표),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, 조직(인력보유) 현황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자료(별지서식 9), 신용평가 등급확인서

라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(별지서식 10).

마. 정성적 평가자료(제안서) : 정성 평가 제안서 표지(별지서식 11), 업체명이 기입된 제안서 원본 1부, 업체명이 기입되지 않은 제안서 7부, PPT 또는 PDF 파일(USB 1부)

바.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(별지서식 8).

- *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며,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.

5. 제출방법

- 가. 입찰공고 : 26.10.16(금)~26.10.27(화) 16:00까지
- 나. 제출기간 : 26.10.16(금)~26.10.27(화) 16:00까지
- 다. 제출방법 : **전자입찰** (입찰서·제안서·가격제안서 전자제출)
- 라. 제출장소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
- 마. 제안서 평가회 : 2026년 10월 30일(금) 11시 (예정) - 장소는 개별 통보
 - 제안설명 : 발표 10분 / 질의응답 10분
 - 우선 협상자 통보 : 별도 통보 (협상기간 : 협상 우선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)
 - ※ 일정변동가능, 적격자에 한해서만 별도 통보.
- 바. 입찰 방법 :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(<http://www.g2b.go.kr>) 공고 확인 후,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한 입찰서·제안서·가격제안서 제출
- 사. 문의처 : 02-913-0751 (제안요청서 관련 질의는 서면(별지서식 12)으로만 접수하며, 구두·전화 문의는 효력이 없음)

*** 제안서(입찰서)제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6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·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국가계약법」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,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,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입찰·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“원본과 상이 없음”을 기재하고 대표자(또는 대리인)가 확인·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,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법령 및 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.
- 마.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유찰 처리되며, 유찰된 경우 또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바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서 작성·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. (단, 관계 법령에서 반환을 의무화한 경우는 예외)
- 사.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, 사업예산 및 계약조건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

니다.

- 아. 본 용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 보조금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하며,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릅니다.
- 자.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, 제출서류 미비·허위 기재,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미제출, 담합 등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4조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,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수·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